

ESG경영혁신위원회 규정

(제정 2022. 2. 28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ESG경영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연구 및 심의한다.

1. ESG 중장기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
2.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3. ESG 경영 활동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ESG 경영 활동 이행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ESG 관련 활동 연구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된다.

③ 학생취업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사회봉사센터장, 지역혁신센터장,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, 서기는 기획예산실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

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맡는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(보고서)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장 업무

제9조(ESG경영 계획수립) ① 위원회는 매년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과 이행 성과 점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계획안은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ESG 경영 활동 개선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(ESG활동 및 개선) ① 위원회는 대학 ESG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ESG 활동에 따른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하며, ESG Risk 개선 활동을 자문한다.

② ESG 활동 및 개선을 위해 교내·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1조(보고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ESG 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
2. ESG 활동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장 보칙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